

## 전자투표제 도입절차 및 유의사항

이서연(조사1팀 법제조사파트)

### [질 의]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중 하나로서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절차 및 운영시의 유의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응 답]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상법의 개정(2010.5.29시행)으로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도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다만,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개최 등 물리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전자투표제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회사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시 주주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전자투표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이 때 회사는 주주가 전자투표를 할 경우 당해 의결권 행사를 철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 의결권의 이중행사 금지 및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전자투표 처리기준 등에 대하여도 함께 통지(공고)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규정상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투표의 경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합리적인 처리방법(예 :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시 참석 주식수에서 제외한다는 동의를 사전에 받는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이미 한 주주라도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에게 충분히 고지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3항). '참고자료'란 주주가 의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의미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회의목적별 참고서류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와 전자투표를 위한 인터넷 주소에 게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주주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동시에 허용하는 경우 주주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4항).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시 이를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제5항).

참고로,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전자투표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전문업체인 전자투표관리기관에 전자투표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전자투표관리기관은 주주총회 개표시까지 전자투표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 증자실패시 증자의 철회 등에 관한 공시방법

이재혁 과장(조사1팀 공시제도파트)

### 【질 의】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 100억원의 일반공모 방식의 증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청약자가 없어,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증자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여야 하는지요?

### 【응 답】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동 신고서가 수리된 후에만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8조)

또한,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고자

## ● 실 전 상 담 사 례 ●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0조 제4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근거해 볼 때, 귀사의 경우 이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약 절차 등이 진행된 것이므로, 귀사에서 계획하는 바와 같이 미청약을 이유로하여 증거계획을 철회하고 증권신고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귀사의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행하고 비록 청약률이 0%이지만 이미 청약일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자본시장법 제128조에 따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청약미달로 인하여 실질적인 증권발행은 없을 지라도, 법상으로는 증권발행을 위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2009.2.4자)에 따라 주식발행이 수반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 합병 등(분할, 분할합병,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교환·이전)의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대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합병 등 종료보고서(사실상 합병 등 종료시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그러나, 합병 등의 경우 주식매수청구대금의 과대로 인하여 합병 등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통상 합병 등 주요사항사항보고서에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합병을 철회한다고 기재함), 이러한 이유로 무산되는 경우에는 합병 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부통제 업무의 대행

강경진 과장(조사2팀 회계제도파트)

### 【질 의】

올해 지주회사를 만들고 신설법인을 설립했는데,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의 상호 및 대부분의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은 회계담당부서가 없으며, 회계업무 등 경영지원 업무는 지주회사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설법인의 경우 회계부서가 없기에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개정하여 내부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지주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요?

### 【응 답】

현행 법령 등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각 개별 회사별로

설계·운영·평가·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이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며, 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본 질의에서 신설회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주회사는 신설회사의 입장에서 일종의 용역대행업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신설회사의 경영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설회사의 경영진은 지주회사가 수행한 관리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신설회사는 개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및 효과성 평가는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업무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주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경영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신설회사의 경영진이 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가 대행하는 신설회사의 관리업무에 대해 신설회사의 경영진(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이 지주회사의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예를 들면, 지주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로 된 공문에 설계의 내용,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첨부)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 관련 문단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42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처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용역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용역대행업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42.1

용역대행업체의 감사인이 용역대행업체의 운영에 내재된 통제와 통제운용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한다면, 경영진은 이러한 보고서가 용역대행업체의 통제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